투자위험등급 : 2 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베어링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베어링자산운용㈜ (02-378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21.12.31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2.01.18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베어링자산운용㈜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 시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1.12.31.)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AX563)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베어링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되,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고배당주 또는 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성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 증권(주식형)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 추가형 / 모자형 /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0%이내	1.434%	0.700%	1.370%	1.437%	245	396	551	879	1,8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차감형(C1)	없음	2.034%	1.300%	1.570%	2.037%	208	400	578	905	1,82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0%이내	1.084%	0.350%	1.010%	1.087%	160	275	395	647	1,3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234%	0.500%	1.200%	1.237%	126	257	393	680	1,497

(주 1)'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1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Class C1 의 경우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로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 한 것입니다.
(주 4)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2021 년 11 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021.01.01 ~ 2021.12.31	2020.01.01 ~ 2021.12.31	2019.01.01 ~ 2021.12.31	2017.01.01 ~ 2021.12.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016-08-29	10.00	17.51	15.37	9.19	9.24
비교지수	2016-08-29	3.63	16.38	13.40	8.00	7.36

수익률 변동성	2016-08-29	15.79	24.03	20.85	17.51	17.03

(주 1) 비교지수: [KOSPI X 100%]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 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1.12.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및 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상현	1970	책임 운용역	13 개	11,627 억원 (팀운용)	10.29%	18.43%	9.63%	18.47%	19 년 7 개월
김지영	1977	부책임 운용역	8 개	7,697 억원 (팀운용)	10.06%	18.43%			14 년 3 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및 혼합유형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참조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 매입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인해 수익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오후 3 시 30 분 이전 : 2 영업일 기준가 매입 · 오후 3 시 30 분 이후 :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 오후 3 시 30 분 이전 : 2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 오후 3 시 30 분 이후 : 3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 산정방법 : (직전일의 자산총액 –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과세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되며(개인 및 일반 법인 15.4%),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 최고 41.8%(과세표준 3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됨). 참고로,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과세표준 200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 및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①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기타 전환 관련 세부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번호: 02-078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
효력발생일	2022.01.18		
판매회사 참조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5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X56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BG75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G7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BY1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AX5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AX5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AX5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AX5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AX5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BY1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BG7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I6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BG7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I6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BU00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이 모집(판매) 가능한 수종의 수익증권 총 좌수는 **10조좌**까지 입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기구로 모집(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판매)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barings.com/k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X56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BG75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BG7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BY1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AX5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AX5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AX5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AX5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AX5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BY1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BG7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BI6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BG7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I6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BU00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4.11.21	- 최초 등록
2015.03.25	-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 추가 - 세법개정사항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16.07.02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
2016.08.23	- 클래스 추가(Class A, Ae, C-W, C-P2) - 환매수수료 삭제 - 이익금 분배 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6.10.17	- 클래스 추가 (Class C-P, C-Pe)
2017.01.18	- 결산 업데이트
2017.07.24	- 클래스 추가(Class C-P2e)
2017.09.29	- 클래스 추가(Class A-G, Class C-G)
2018.03.13	- 결산 업데이트
2018.08.1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19.03.08	- 결산 업데이트
2019.08.19	- 기업공시서식 변경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2019.09.16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2020.01.17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2020.03.10	- 회계감사 의견 확정
2021.01.19	- 결산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1.03.30	- 회계감사 의견 확정
2022.01.18	- 결산업데이트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명확화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투자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대표전화: 02-3788-05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팀운용

(2021.12.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및 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상현	1970	책임 운용역	13 개	11,627 억원 (팀운용)	10.29%	18.43%	9.63%	18.47%	19 년 7 개월
김지영	1977	부책임 운용역	8 개	7,697 억원 (팀운용)	10.06%	18.43%			14 년 3 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최상현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한가람 투자자문 주식운용1본부 (2002.04~2007.02)	• 한화자산운용(구. 푸르덴셜) 주식운용1팀 (2007.03~2013.01) •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운용팀 (2013.02~현재)
김지영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PCA 투자신탁운용 리서치팀 (2001.07~2005.12)	• 슈로더 투자신탁운용 Investment (2005.12~2009.12) •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운용팀 (2009.12~현재)

주1)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2) 운용중인 공·사모 펀드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

(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및 혼합유형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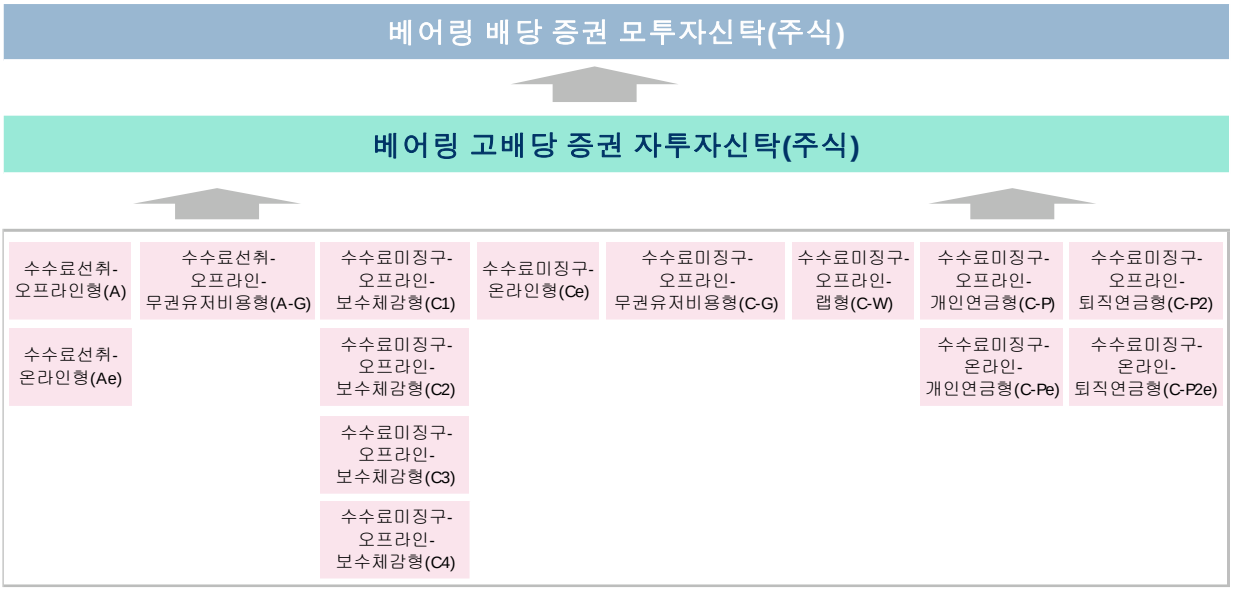

다.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수익증권의 Class(종류)별 차이점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납입액의 0.7%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700	0.700	0.020	0.014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700	0.350	0.020	0.014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0.700	0.49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0.700	1.30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0.700	1.10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0.700	0.90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0.700	0.70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700	0.50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0.700	0.69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0.700	-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0.700	0.90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0.700	0.60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700	0.450	0.020	0.0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0.700	0.300	0.020	0.014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주1) 보수(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 보수 외의 기타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신탁 재산의 40% 이하
베어링 고배당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 국내 주식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투자목적	-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및 배당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주요투자전략]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되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고배당주 또는 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성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함 -비교지수: KOSPI 100%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개별종목 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고배당주 또는 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성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KOSPI 10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투자신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수익증권	100%이하	집합투자규약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②	유동성	10% 이하-(단, 대량 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 이내)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③	기타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①내지 ③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해지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내지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나. 모투자신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 거래	-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집합투자 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환매조건부대상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⑧	장내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함)
⑨	증권의 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⑩	증권의 차입	20% 이하	-
⑪	-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①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②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③	동일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⑤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⑥	후순위 채권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제한 및 한도의 예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가.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⑥내지 ⑩의 규정, 나. 투자제한 ②내지 ④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로 봄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나. 투자제한 ②, ④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 투자전략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이 투자신탁 자산 대부분 투자합니다. 특히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고배당주 또는 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성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운용전략에 의한 결과와 시장 성과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KOSPI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지수 등장 등에 따라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변경 시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를 통하여 공시될 것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X 100%]

'KOSPI' 지수 설명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수로 국내증권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1980 년 1 월 4 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 할 계획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 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을 주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 이자 및 배당수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되,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고배당주 또는 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성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대상 종목은 집합투자업자의 기업분석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에 대한 판단 아래 투자대상군(Buying List)에 편입한 종목 중, 집합투자업자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종목으로, 판단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배당주 또는 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 선정기준 예시
>시장 또는 업종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
>역사적 평균배당률이 안정적이거나 주당 배당금이 상승 추세인 주식
>역사적 평균 배당을 기준으로 주가 하락이 과도한 주식
>배당 정책이 개선되며, 배당성향이 인색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주식
>잉여 현금흐름이 대체로 플러스(+)인 주식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 이익 환원을 중시하는 주식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운용역이 배당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주식

2)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특히 시장평균대비 배당 수익율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배당주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운용 전략에 의한 결과를 시장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X 100%]

'KOSPI' 설명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수로 국내증권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1980 년 1 월 4 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 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주식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 할 계획입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을 주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 이자 및 배당수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 매입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인해 수익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

위험	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 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 수익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 등 제도적 위험	이 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회사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회사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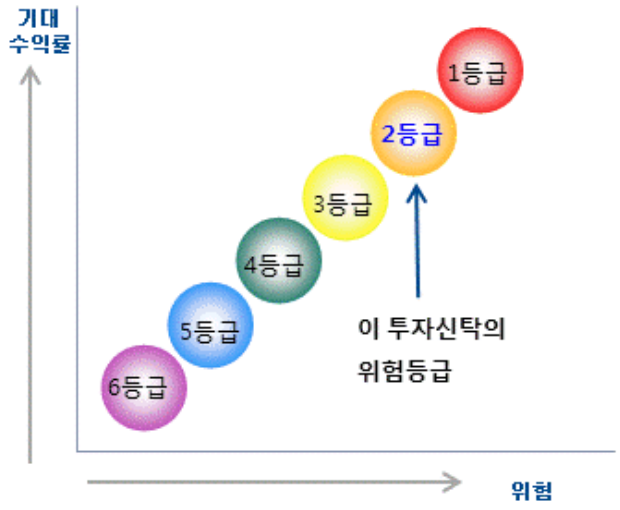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의 변화 및 주식 시장변동에 연동되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0.85%로 이 투자신탁은 **6단계 등급 체계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채권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계산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0.85%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합니다.

※ 추후에도 매 결산 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 매우높은 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 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다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각 판매회사의 자체 상품위험등급에 따라 각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위의 투자위험등급과 상이한 투자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0.01.17	2등급	3등급	설정 후 3년 경과로 위험등급부여기준 변경 (투자대상자산 => 실제수익률변동성)
2021.01.19	3등급	2등급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입자격 내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을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Class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Class C1 수익증권을 2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Class C1 수익증권을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을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를 통하여 투자하는 가입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온라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사업자(온라인 전용)

3)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사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3시30분(15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3시30분(15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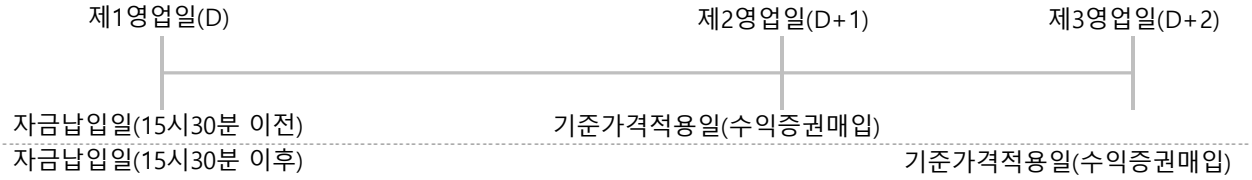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매입좌수는 익영업일에 확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마켓타이밍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베어링자산운용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미국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 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3시30분(15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3시30분(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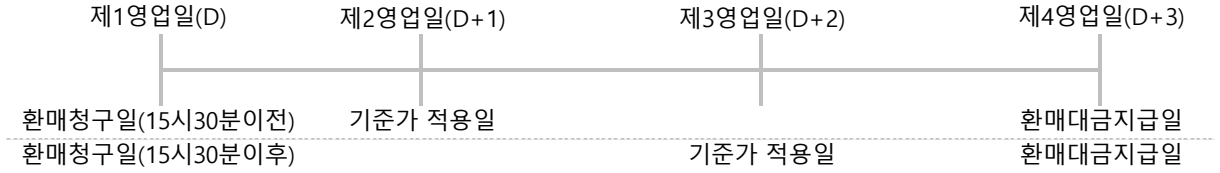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전자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

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투자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를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투자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은 나머지 자산(이라 "정상자산"이라 함)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신탁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절차

1)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①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수익증권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수익증권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수익증권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시 기준가격

수익증권 전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u>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으로 합니다.

3) 수익증권의 전환관련 유의사항

①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②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 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기준가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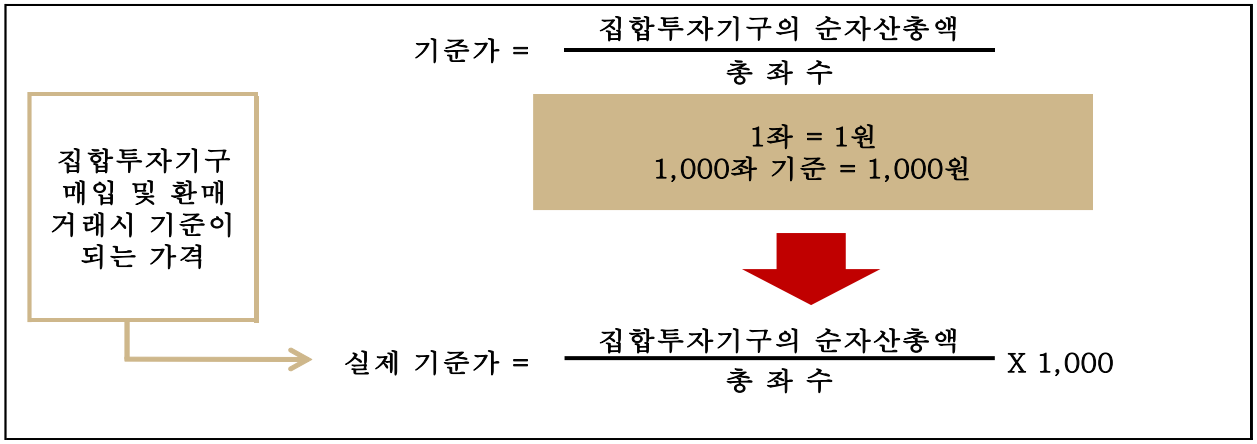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기 상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가액(1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납입액의 0.7%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700	0.700	0.020	0.014	1.434	1.370	0.003	1.437	1.437	0.10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700	0.350	0.020	0.014	1.084	1.010	0.003	1.087	1.087	0.1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0.700	0.490	0.020	0.014	1.224	-	-	1.224	1.22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0.700	1.300	0.020	0.014	2.034	1.570	0.003	2.037	2.037	0.1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0.700	1.100	0.020	0.014	1.834		0.003	1.837	1.837	0.1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0.700	0.900	0.020	0.014	1.634		0.003	1.637	1.637	0.1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0.700	0.700	0.020	0.014	1.434		0.003	1.437	1.437	0.1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Ce)	0.700	0.500	0.020	0.014	1.234	1.200	0.003	1.237	1.237	0.1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0.700	0.690	0.020	0.014	1.424	-	-	1.424	1.42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0.700	-	0.020	0.014	0.734	-	0.003	0.737	0.737	0.0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0.700	0.900	0.020	0.014	1.634	-	0.003	1.637	1.637	0.1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700	0.450	0.020	0.014	1.184	-	0.003	1.187	1.187	0.1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0.700	0.600	0.020	0.014	1.334	-	0.003	1.337	1.337	0.1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0.700	0.300	0.020	0.014	1.034	-	0.003	1.037	1.037	0.103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

다.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 (2021년 11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2)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 관련비용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5	396	551	879	1,80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45	396	551	879	1,804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0	275	395	647	1,3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0	275	395	647	1,36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4	323	457	739	1,54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4	323	457	739	1,5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8	400	578	905	1,82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8	400	578	905	1,8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6	257	393	680	1,49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6	257	393	680	1,4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5	296	452	780	1,7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5	296	452	780	1,7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5	154	236	410	915

랩형(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5	154	236	410	9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7	340	518	892	1,94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7	340	518	892	1,9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1	247	378	654	1,4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1	247	378	654	1,4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6	278	425	734	1,61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6	278	425	734	1,6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6	216	331	573	1,26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6	216	331	573	1,268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A 수익증권과 종류C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지나게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Class C1의 경우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로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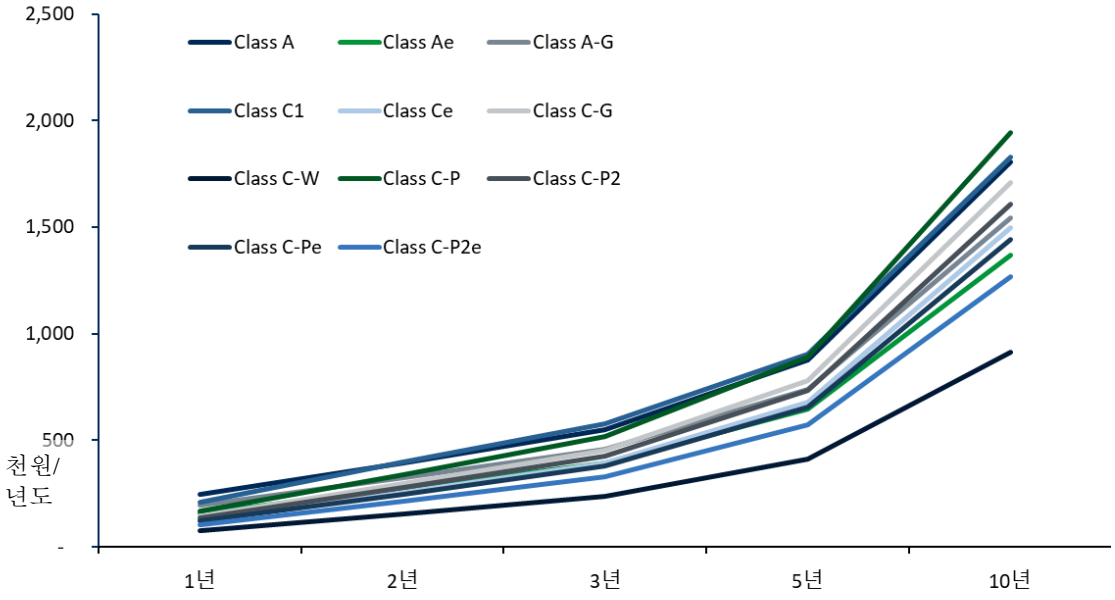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 ·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은 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내용으로 국내법과 국내의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 및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 설명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임을 전제로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세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투자자 개인의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되며(개인 및 일반 법인15.4%),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 최고 41.8%(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됨). 참고로,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

-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전환,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사건"이라 함)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정통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 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4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5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6기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확정 전

가. 요약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21.12.31	2020.12.31	2019.12.31
Ⅰ.운용자산	229,658,384,064	234,995,168,799	308,907,123,855
증권	227,522,057,882	232,779,395,697	306,908,864,015
현금 및 예치금	336,326,182	215,773,102	1,998,259,840
기타 운용자산	1,800,000,000	2,000,000,000	
II. 기타자산	8,030,057,848	9,446,111,184	10,655,856,350
자산총계	237,688,441,912	244,441,279,983	319,562,980,205
I. 기타부채	8,045,464,267	9,500,781,243	10,703,633,201
부채총계	8,045,464,267	9,500,781,243	10,703,633,201
I. 원본	144,404,748,538	159,603,489,670	261,328,632,311
II. 이익조정금	85,238,229,107	75,337,009,070	47,530,714,693
자본총계	229,642,977,645	234,940,498,740	308,859,347,004
Ⅰ. 운용수익	25,356,386,444	59,943,567,232	37,165,586,353
이자수익	11,551,828	9,851,810	25,666,271
배당수익	7,568,804,989	5,304,288,432	8,580,808,893
매매/평가차익(손)	17,776,029,627	54,629,426,990	28,559,111,189
II. 운용비용	3,925,294	3,626,714	3,850,000
매매수수료	625,294	326714	0
기타비용	3,300,000	3,300,000	3,850,000
III. 당기 순이익	25,352,461,150	59,939,940,518	37,161,736,353
* 매매회전율	0	0	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주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271,194	292,047	223,977	255,534	233,884	267,325	261,329	317,462
20200101 - 20201231	261,329	308,859	181,532	203,152	290,536	340,305	159,603	240,250
20210101 - 20211231	159,603	234,940	93,961	153,454	112,766	181,837	144,405	237,21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27,173	28,366	4,729	5,204	8,391	9,230	23,511	27,291
20200101 - 20201231	23,511	27,291	6,455	7,603	16,875	20,507	13,092	19,086
20210101 - 20211231	13,092	19,086	11,208	18,232	9,285	14,752	15,015	24,07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2,019	2,125	1,175	1,308	898	1,012	2,297	2,697
20200101 - 20201231	2,297	2,697	1,784	2,136	2,335	2,802	1,746	2,584
20210101 - 20211231	1,746	2,560	7,573	12,433	3,188	5,160	6,147	9,94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8,615	8,868	3,434	3,711	10,665	11,573	1,384	1,575
20200101 - 20201231	1,384	1,575	3,992	4,318	3,609	4,008	1,768	2,512
20210101 - 20211231	1,768	2,512	2,707	4,220	2,961	4,541	1,515	2,35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159,279	137,941	38,115	34,807	186,301	169,430	11,093	10,640
20200101 - 20201231	11,093	10,640	2,955	2,680	13,173	12,035	875	1,050
20210101 - 20211231	875	1,050	2,215	2,879	1,857	2,448	1,233	1,62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7,691	7,045	167,889	161,424	35,493	34,345	140,087	142,397
20200101 - 20201231	140,087	141,468	21,515	19,913	157,562	148,465	4,821	6,103
20210101 - 20211231	4,821	6,044	1,185	1,630	5,473	7,396	572	78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8	8	6,353	6,705	419	449	5,933	6,619
20200101 - 20201231	5,933	6,485	116,379	117,120	69,910	81,389	52,506	72,075
20210101 - 20211231	52,506	71,145	7,898	11,655	34,837	51,285	26,149	38,97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15,952	16,729	5,770	6,398	6,499	7,260	15,223	17,788
20200101 - 20201231	15,223	17,788	6,012	6,827	14,478	17,302	6,758	9,937
20210101 - 20211231	6,758	9,895	6,724	10,906	6,262	10,040	7,244	11,69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4,956	5,326	6,060	6,906	2,472	2,826	8,543	10,281
20200101 - 20201231	8,543	10,220	2,885	3,388	6,300	7,404	5,177	7,832
20210101 - 20211231	5,177	7,703	20,505	33,690	25,227	41,150	540	89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5,472	5,685	1,474	1,615	1,420	1,561	5,526	6,372
20200101 - 20201231	5,526	6,372	1,177	1,281	2,027	2,329	4,676	6,759
20210101 - 20211231	4,676	6,759	590	939	1,098	1,729	4,168	6,61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1,201	1,237	877	951	547	596	1,531	1,758
20200101 - 20201231	1,531	1,758	2,079	2,450	1,614	1,846	1,997	2,885
20210101 - 20211231	1,997	2,864	1,708	2,709	1,471	2,302	2,248	3,55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67,623	69,895	19,041	20,783	16,924	18,518	69,740	80,235
20200101 - 20201231	69,740	80,235	19,087	21,395	25,005	28,425	63,822	92,312
20210101 - 20211231	63,822	92,217	14,742	23,364	11,823	18,661	66,806	106,28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90101 - 20191231	9,882	8,462	5,918	5,346	5,960	5,424	9,840	9,407
20200101 - 20201231	9,840	9,407	13,260	12,827	9,124	8,582	13,977	16,846
20210101 - 20211231	13,977	16,569	22,369	29,366	13,553	17,646	23,026	30,14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합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www.kofia.or.kr)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연도별 수익률의 경우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021.01.01 ~ 2021.12.31	2020.01.01 ~ 2021.12.31	2019.01.01 ~ 2021.12.31	2017.01.01 ~ 2021.12.31	
고배당증권자	2016-08-29	11.60	19.19	17.03	10.18	10.16
비교지수	2016-08-29	3.63	16.38	13.40	8.00	7.36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016-08-29	10.00	17.51	15.37	9.19	9.24
비교지수	2016-08-29	3.63	16.38	13.40	8.00	7.3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016-08-31	10.39	17.92	15.77	9.57	9.63
비교지수	2016-08-31	3.63	16.38	13.40	8.00	7.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016-08-29	9.34	16.82	14.69	8.54	8.59
비교지수	2016-08-29	3.63	16.38	13.40	8.00	7.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2017-08-29	9.55	17.05	14.91	-	6.50
비교지수	2017-08-29	3.63	16.38	13.40	-	5.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2018-08-29	9.78	17.28	15.14	-	10.55
비교지수	2018-08-29	3.63	16.38	13.40	-	7.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2019-08-29	9.99	17.51	-	-	20.25
비교지수	2019-08-29	3.63	16.38	-	-	2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016-08-31	10.22	17.75	15.60	9.41	9.46

비교지수	2016-08-31	3.63	16.38	13.40	8.00	7.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2016-09-19	10.78	18.33	16.17	9.95	10.38
비교지수	2016-09-19	3.63	16.38	13.40	8.00	7.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016-11-28	9.77	17.28	15.14	8.97	9.49
비교지수	2016-11-28	3.63	16.38	13.40	8.00	8.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2016-09-07	10.27	17.80	15.66	9.54	9.75
비교지수	2016-09-07	3.63	16.38	13.40	8.00	7.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2016-12-30	10.11	17.63	15.49	9.30	9.14
비교지수	2016-12-30	3.63	16.38	13.40	8.00	7.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2017-08-02	10.44	17.98	15.83	-	6.69
비교지수	2017-08-02	3.63	16.38	13.40	-	4.78
수익률 변동성	2016-08-29	15.79	24.03	20.85	17.51	17.03

주1) 비교지수: [KOSPI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형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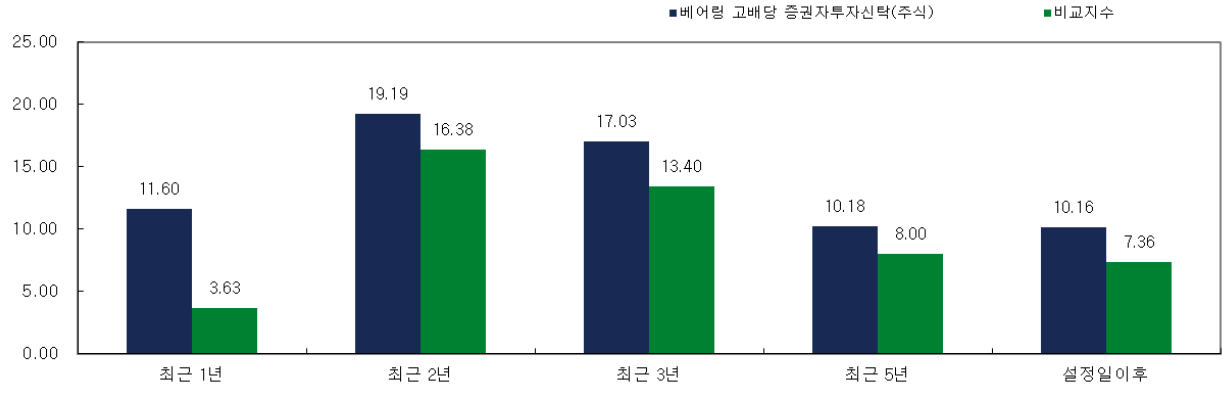

나. 연도별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21.01.01 ~ 2021.12.31	2020.01.01 ~ 2021.12.31	2019.01.01 ~ 2021.12.31	2018.01.01 ~ 2021.12.31	2017.01.01 ~ 2021.12.31
고배당증권자	2016-08-29	11.60	27.36	12.81	-15.55	19.98
비교지수	2016-08-29	3.63	30.75	7.67	-17.28	21.76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016-08-29	10.00	25.60	11.20	-15.99	20.28

비교지수	2016-08-29	3.63	30.75	7.67	-17.28	21.7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016-08-31	10.39	26.03	11.59	-15.69	20.70
비교지수	2016-08-31	3.63	30.75	7.67	-17.28	21.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016-08-29	9.34	24.87	10.53	-16.49	19.57
비교지수	2016-08-29	3.63	30.75	7.67	-17.28	21.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2017-08-29	9.55	25.11	10.75	-16.33	-
비교지수	2017-08-29	3.63	30.75	7.67	-17.28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2018-08-29	9.78	25.36	10.97	-	-
비교지수	2018-08-29	3.63	30.75	7.6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2019-08-29	9.99	25.60	-	-	-
비교지수	2019-08-29	3.63	30.75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016-08-31	10.22	25.84	11.42	-15.82	20.52
비교지수	2016-08-31	3.63	30.75	7.67	-17.28	21.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2016-09-19	10.78	26.45	11.98	-15.39	21.12
비교지수	2016-09-19	3.63	30.75	7.67	-17.28	21.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016-11-28	9.77	25.36	10.97	-16.16	20.05
비교지수	2016-11-28	3.63	30.75	7.67	-17.28	21.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2016-09-07	10.27	25.90	11.47	-15.77	21.03
비교지수	2016-09-07	3.63	30.75	7.67	-17.28	21.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2016-12-30	10.11	25.72	11.31	-15.90	20.40
비교지수	2016-12-30	3.63	30.75	7.67	-17.28	21.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2017-08-02	10.44	26.08	11.64	-15.64	-
비교지수	2017-08-02	3.63	30.75	7.67	-17.28	-

주1) 비교지수: [KOSPI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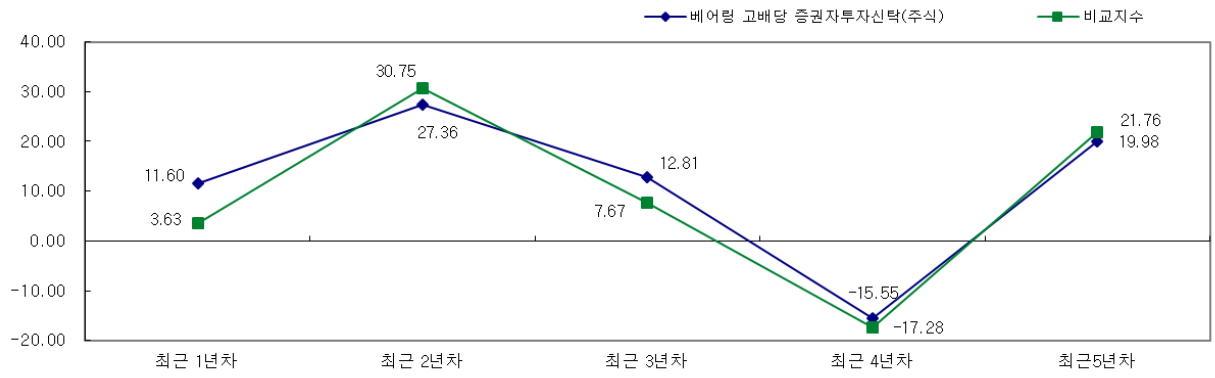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1.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한국 원	0	0	0	227,522	0	0	0	0	0	336	9,830	237,688
	(0.0)	(0.0)	(0.0)	(95.72)	(0.0)	(0.0)	(0.0)	(0.0)	(0.0)	(0.14)	(4.14)	(100.0)
합계	0	0	0	227,522	0	0	0	0	0	336	9,830	237,688
	(0.0)	(0.0)	(0.0)	(95.72)	(0.0)	(0.0)	(0.0)	(0.0)	(0.0)	(0.14)	(4.14)	(1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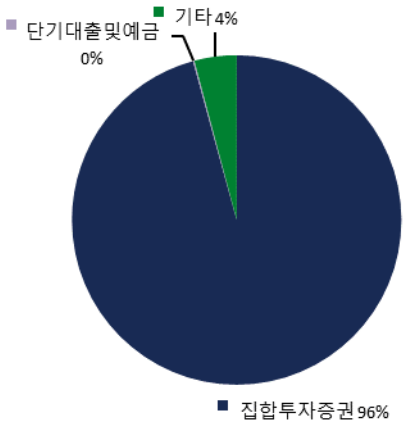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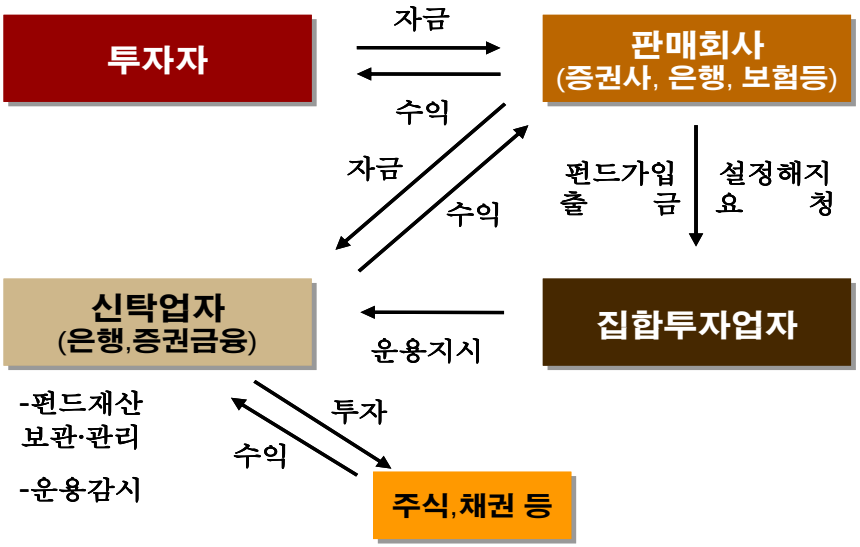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04523)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02)3788-0500 / www.barings.com/ko	
회사연혁	1991.07 1997.02 1998.07 1999.02 1999.03 2002.04 2004.07 2013.03	에셋코리아㈜ 창립(자본금 5억) 에셋코리아-동양투자자문 합병(자본금 30억) 투자일임업무 자격획득 자산운용사 허가 취득 및 등록(자본금 70 억) SEI Investments, IFC 와 합작 자본금 증자(자본금 120 억) MetLife Inc. Holdings가 지분 인수 (34.0%)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가 지분인수(100%)
자본금	120억원	
주주현황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100%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②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③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FY 2020 2020.12.31 현재	FY 2019 2019.12.31 현재	항 목	FY 2020 2020.01.01~ 2020.12.31	FY 2019 2019.01.01~ 2019.12.31
유동자산	70,697	69,654	영업수익	26,339	28,649
비유동자산	4,739	5,753	영업비용	14,814	14,902
자산총계	**75,436**	**75,407**	**영업이익(손실)**	**11,525**	**13,747**
유동부채	5,971	5,930	영업외수익	0	0
비유동부채	7,107	16,089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13,078**	**22,019**	**경상이익(손실)**	**11,525**	**13,747**
자본금	12,000	12,000	특별이익	0	0
이익잉여금	50,358	41,388	특별손실	0	0
자본조정	0	0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	11,525	13,747
자본총계	**62,358**	**53,388**	법인세 비용	2,556	3,118
부채 및 자본총계	**75,436**	**75,407**	**당기 순이익(순손실)**	**8,969**	**10,629**

라. 운용자산규모 (2021.12.31 현재, 단위: 억원)

집합투자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혼합자산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투자계약	재간접					
수탁고	11,879	809	1,773	0	659	0	2,187	0	1	17,309

주1)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운용자산 제외한 수치임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04632)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02)1599-5000 / www.wooribank.com
회사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⑨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의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02) 6714-4600 http://www.hanais.co.kr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① 주요 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03131) 서울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4층 (02)399-3350 www.koreaap.com	(0732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4층 (02)3215-1400 www.bond.co.kr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pricing.co.kr	(07805)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에프앤가이드빌딩2층 (02) 721-5300 www.fnpricing.com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둡니다.

②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투자자총회의 소집

- 투자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투자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과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에게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투자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투자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투자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첫 문장)에 따른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투자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2항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합니다. 연기투자자총회의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 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분의 1이상"으로 적용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투자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투자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자산 운용내역서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주체[1]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주체[1]: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칭),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②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⑤ 임의해지 ③항과 ④항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년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⑥ 임의해지 ③항과 ④항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 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	**- 거래 증권사 및 선물회사의 선정기준은 저비용(Lowest cost) /중개능력(Best execution)** **저비용(Lowest Cost)** 1. 국내 채권시장의 특성상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는 증권사별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래에 따른 명목 비용은 동일함 2. 비용(Cost) 개념은 단지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timing cost)과 체결실패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경우 중개회사별로 거래비용(Cost)이 달라질 수 있음 **중개능력(Best Execution)** 1. 호가의 정확성과 신속한 체결 능력이 증권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2. 중개회사의 팀워크와 개별 브로커의 능력을 감안하여 거래 우선순위 결정 **중개회사의 안정성** 1.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고려 2. 매매와 관련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 - 당사는 매 분기별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Analyst), 트레이더의 브로커(Broker) 평가회의에 따라 중개회사를 평가 하고 다음 분기 거래 중개회사를 결정함 - 결정에 따른 중개회사별 거래순위 기준(guideline)을 월별로 점검하고 차이 원인 등을 분석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 인덱스형투자신탁입니다.
파생상품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에 제한없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합니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일부 유동성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일별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사모펀드와 일부 요건을 충족한 공모펀드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신탁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펀드의 환매를 청구할 경우, 판매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환매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